

# 2024년도 전북체육중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안)

안건  
번호 2023-94

제출연월일 : 2024. 2. 19.

제안자 : 학교장

담당자 : 김영진

## 1. 제안 이유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세계인권선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교권침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 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하여 2024학년도 전북체육고등 학교생활규정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정절차

-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구성(7인) 전북체육중학교-7679(2023.12.5.)
- 개정안 발의
- 학생 등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학부모 가정통신문 발송 : 전북체육중학교-7826(2023.12.11.)  
생활규정 개정심의위원회 협의활동 : 전북체육중학교-7925(2023.12.14.)
- 1차 시안 마련
- 토론회, 공청회 개최: 초안의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최종 시안 마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 학교장 결재, 공포 및 정보 공시
- 적용 및 환류

## 3. 주요 내용과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

2023년 9월 1일(금)부터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보장되어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 ◇

- 교원의 허락받지 않은 경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수업방해 학생 제지, 분리 등을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 교원-보호자 간 상담예약제 시행
-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여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붙임 1. 전북체육중학교 학교생활규정(중) 각1부. 끝.

# 전북체육중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2022년 1월 1일

개정: 2023년 12월 31일

##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및 목적)** 이 규정은 ‘전북체육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하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근거 및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의거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 제3조 (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 제4조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

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2장 권리와 책임

**제5조 (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10. 정보에 관한 권리
11. 양심·종교·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12. 자치활동의 권리
13.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및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14. 복지 및 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15. 문화 활동, 급식, 건강에 관한 권리
16.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17.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18.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6조 (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 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 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 제3장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법

**제7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 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9조(생활지도의 방식)**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고시 제12조 제6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35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 (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b>3호 지도</b>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을 경우	학생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본인의 책걸상을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b>4호 지도</b> (정규수업 중 또는 그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3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했을 경우	학년 교무실 (30분*) * 교육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담당자: 교감-학생부장 순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후에 통지함.	

- ④ 4호 지도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 2회 이상 분리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담임교사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린다.

### 제10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1조(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 생활

### 제12조 (대인관계에서의 자세)

- ① 학교 구성원은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③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으며,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품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⑥ 학생은 학교 구성원 사이의 따돌림, 폭력 등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으며, 갈등이나 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 ⑦ 학생은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 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⑧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제13조 (시설이용 및 환경)

- ①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② 학교의 시설 및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 ③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 등 학교 시설을 사용할 때 규칙과 절차를 잘 지킨다.
- ④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⑤ 수도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 ⑥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는 등 환경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 ⑦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공간(식생활관, 화장실 등)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 제14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 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 제15조 (폭력 등에 관한 대처)

- ①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학교에 알려야 한다.
- ②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제16조 (학급 및 수업에서의 태도)

-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으며,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④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 ⑤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⑥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⑦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⑧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 제17조 (휴식 시간)

- ① 학교장, 교직원 등은 학생들의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 내에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
- ②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휴식 시간에 컴퓨터실, 음악실, 체육관, 운동장,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 ④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실과 복도 등에서 체육활동을 하지 않으며,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⑤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하지 않는다.

**제18조 (소지 및 사용 불가 물품)** 학생은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①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② 칼, 쇠 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④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⑤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⑧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9조 (휴대폰 및 전자기기 사용)**

- ① 조회시간에 학급별로 휴대전화, 태블릿 및 스마트워치를 수거하고, 종례시간에 돌려준다.
- ② 수업 중에 위 ①항의 휴대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이 인정된 경우나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 (용모)**

- ① 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대한 일괄규제는 하지 않는다. 단,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③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용의복장 기준

구분	기준
교복 및 체육복	1.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자유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등교시에 교복착용, 교내 및 하교시에서는 체육복 착용 가능) 1. 교복 및 체육복의 모양과 색상 등은 별도로 정한다.
두발	1. 교내에서는 복장의 부착물(명찰 등)은 소정의 위치에 부착 또는 패용한다. 1. 두발의 길이는 자율로 한다. 1. 염색은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의 머리 특성상 부가피한 경우 담임교사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악세사리	1. 목걸이, 반지, 팔찌는 허용하지 않는다. 1. 귀고리는 귓볼에 붙는 종류에 한하여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한 개씩만 허용한다. 1. 시력보호용 렌즈를 제외한 미용목적의 렌즈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1. 체육이나 실습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21조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단,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타인의 자유로운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22조 (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제23조 (자치활동)

- ①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들은 학생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③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 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필수적으로 편성하고, 학생자치 담당교사에게 개산급을 통해 예산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 ⑥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⑦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규정에 따른다.
- ⑧ 학생회 규정 및 선거 관리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회에서 한다.

### 제24조 (동아리 활동)

-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 ②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③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제5장 생활교육

**제25조 (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 폭력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 ① 도구에 의한 체벌
- ②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 ③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 ④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⑤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제26조 (교사의 권한)** 생활교육 상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을 수정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육적 상담 및 조언
- ② 교육환경 조성
- ③ 행동 개선 요구
- ④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 ⑥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27조 (소지 및 사용 불가 물품과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에 대한 검사와 규제)**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4호. 학생 소지 금지 물품(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 물품)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학생생활규정 18, 27조에 의해 소지 및 사용 불가능한 물품	하루 또는 그 이상 (보호자와의 협의 필요)	각 학년 교무실	교과담당교사가 수업시간에 분리보관 후 학생 담임교사에게 인계
학생생활규정 19, 27조에 의해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의 제출에 속임수를 쓰는 것을 포함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교육활동 시간 중 소지하고 있을 경우			

- ④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생의 담임교사에게 알려야 하며, 담임교사는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린다.
- ⑤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학생을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⑥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 (학급 생활 규칙)** 학급 담당 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및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

-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학교위원회는 교감, 인성인권부장, 교무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교위원회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인성인권부장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학교위원회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인권부장의 제청으로 교

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⑤ 학교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⑥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0조 (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함께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자발적 반성을 통한 책임감 부여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공동체성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시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 ④ 학교의 장은 징계 시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면 안 된다.

### 제31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내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 참여 여부는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 사회봉사: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제32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교내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인성인권부, 해당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②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및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제33조 (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교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단, 유선통화 일시, 내용은 기록하거나 서면 통보 사본은 보관한다.

### 제34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교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교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5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및 사후 조치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제36조 (조치의 기준) 학교위원회 조치 기준은 아래 별표와 같다.

- ① 고의성, 상습성, 사태의 경중 및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치의 단계를 달리할 수 있다.
- ② 중복 위반의 경우 각 항목별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일반적인 조치 사안은 아래 별표를 참고하여 결정하며, 특별한 사안의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표> '학교위원회' 조치 기준						
구 분	항	내 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준법	1	반복적인 문제행동으로 인해 주민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2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구속 후 석방된 학생	○	○		
	3	형법상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법에 저촉되어 학교와 지역에 선도 위임된 학생	○	○	○	○
	4	선도기간 중 교내봉사 이상의 행위를 한 학생		○	○	○
	5	2회 이상 4회 조치를 받았으나 개선이 없는 학생	○	○	○	○
	6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사회봉사를 받은 학생		○	○	○
	7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반대한 학생	○	○	○	
	8	타인을 해칠 목적으로 흥기를 소지한 학생		○	○	○
	9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10	자동차,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등을 면허 없이 운전하고 등교하거나 폭주하는 행위를 하는 학생	○	○	○	○
	11	징계 지도에 불응한 경우		○	○	○
	12	자전거 등·하교 중 헬멧을 포함한 안전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	○	○		
수업	13	수업 진행을 심하게 방해하거나 특정한 이유 없이 수업을 거부한 학생 (자유학습 시간 포함)	○	○	○	
	14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 또는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교권 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함)	○	○	○	○
	15	수업시간 중 음식을 먹거나 껌을 씹는 학생	○			
	16	교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	○
	17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약물	18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19	흡연 또는 음주에 동조(부추기거나 라이터를 소지한 학생 포함)한 학생	○	○		
	20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
퇴폐 행위	21	도박을 한 학생	○	○	○	○
	22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23	음란 서적과 동영상 소지하거나 유포한 학생 (학생들 간의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처리함)	○	○	○	○
사이버 범죄	24	사이버 상에서 타인을 비방한 학생	○	○	○	○
	25	사이버 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관리한 학생		○	○	○
	26	사이버 상에서 사기행각에 연관된 학생			○	○
	27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 성매매에 연관된 학생			○	○
	28	사이버 상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거래하고 구입을 한 학생			○	○
	29	사이버 상에서 도박과 유해사이트 강제 가입 또는 권유한 학생	○	○	○	○
	30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학생	○	○	○	○

## 제6장 규정의 개정

### 제37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전북체육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를 둔다.
- ② 개정위원회는 7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 ⑤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 ⑥ 개정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⑦ 개정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문헌조사 및 의견 수렴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⑧ 개정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38조 (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가. 개정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나.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 다. 재직 교원의 과반수
  - 라.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마.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개정의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시기에 상관없이 수시로 개정할 수 있다.

### 제39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40조 (심의 및 결정)

- ① 개정위원회는 학교생활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1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